

**첨부 7**

**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**

**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** **필기전형**

장애유형 및 정도		필기시험		비고		
		편의지원 내용	증빙서류			
지체 장애인	상지	공통	·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,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·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-		
	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	·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) ·[선택형 시험]답안지 대필	-	기존 1~3급	
	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·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	-	기존 4~6급	
	하지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/ 심하지 않은 장애인	·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-	기존 1~6급	
뇌병변 장애인	공통		·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,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·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-		
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		·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) ·[선택형 시험]답안지 대필	-	기존 1~3급	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		의사 진단서 (원본)	기존 4~6급	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	·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	-		
시각 장애인	공통		·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,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	-		
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	·좋은눈의 시력이 0.04이하인 사람	·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)	-	기존 1~2급	
		·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	-	기존 3급 2호	
		·좋은 눈의 시력이 0.06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		-	기존 3급 1,2호	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·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	의사진단서 (원본)	기존 4급 2호	
		·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		-		
		·좋은눈의 시력이 0.2이하인 사람		-	기존4,5급 1호	
		·나쁜눈의 시력이 0.02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 시력이 0.3이하인 사람		의사진단서 (원본)	기존6급 중 좋은 눈 시력 0.3이하	
	·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			·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	-	기존 5급 2호, 6급
	청각 장애인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/ 심하지 않은 장애인		·서면자료 제공 ·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	-	기존 2~6급

\* 확대문제지 : A3 규격의 118%(14point)

\* 확대답안지 :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총 2종류 중 택1

**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**

**면접전형**

장애유형 및 정도		편의지원 내용	비고
지체 장애인	상지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/ 심하지 않은 장애인	기존 1~6급
	하지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/ 심하지 않은 장애인	
뇌병변 장애인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/ 심하지 않은 장애인		기존 1~6급
시각 장애인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/ 심하지 않은 장애인		기존 1~6급
청각 장애인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/ 심하지 않은 장애인		기존 2~6급

\* 면접시험 편의지원은 필기시험 편의지원 시 제출한 증명서 혹은 진단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결정